

법령 I -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관계 법령

비상대비자원 관리법(시행령 포함)

- 문 1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여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한다.
 - ② 비상대비업무는 해당 소관별로 자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·국회사무총장·법원행정처장·헌법재판소사무처장·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이 집행한다.
 - ③ 주무부장은 중점관리대상자원 지정 권한 중 해당 부령으로 정하는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권한을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.
 - ④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주무부장의 중점관리대상인력의 참여 및 중점관리대상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에 관한 권한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된다.
- 문 2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. (가) ~ (라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과 인력자원 및 물적자원의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(가) 와/과 협의를 거쳐 (나)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(나) 은/는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.
- (다) 은/는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시·도지사는 확정된 (라) 을 시장·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| <u>(가)</u> | <u>(나)</u> | <u>(다)</u> | <u>(라)</u>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①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중앙행정기관의 장 | 집행계획 |
| ② 국무총리 | 대통령 | 국무총리 | 집행계획 |
| ③ 행정안전부장관 | 국무총리 | 중앙행정기관의 장 | 시행계획 |
|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| 대통령 | 행정안전부장관 | 시행계획 |

문 5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인력의 참여 협력 요청은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른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다.
- ②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중점관리대상자원으로 지정할 당시에 미리 그 참여 및 사용 협력에 동의를 받은 인력·물자를 대상으로 한다.
- ③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협력 요청은 문서로 하여야 하나, 긴급한 경우 구두로 할 수 있다.
- ④ 주무부장은 「통합방위법」에 따라 통합방위사태가 해제되더라도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주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을 연장할 수 있다.

문 6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비상대비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간마다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,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무부장관, 시·도지사 및 교육감과 협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, 시·도 및 시·도 교육청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비상대비교육을 할 수 있다.
- ③ 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교육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비상대비교육의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.
- ④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장이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비상대비교육에 대한 위탁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.

문 7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훈련의 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에 따른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는 훈련실시명령의 발령일부터 7일 이내에 훈련대상자 본인에게 하여야 한다.
- ② 국무총리가 인력훈련실시명령을 발령한 경우 그 훈련통지서의 발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여야 한다.
- ③ 훈련을 갑자기 실시하는 경우에 인력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있지만, 물적자원훈련통지서의 교부기간은 줄일 수 없다.
- ④ 인력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장은 인력훈련대상자 본인이 없을 때에는 동일 세대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인력훈련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.

문 8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동시관리훈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정부는 비상대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방송 및 인쇄에 관한 시설과 그 시설에 종사하는 인력 자원에 대하여 동시에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.
- ㄴ. 훈련실시명령은 물적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주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국무총리가 발령한다.
- ㄷ. 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선박의 소유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아 그 선박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훈련통지서 교부권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.
- ㄹ. 훈련실시명령이 있는 경우 인력훈련통지서는 주무부장관이 발급 하여 훈련대상자가 거주하는 읍·면·동의 장에게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.

- ① ㄱ, ㄷ
- ② ㄱ, ㄹ
- ③ ㄴ, ㄷ
- ④ ㄴ, ㄹ

문 9. 비상대비자원 관리법령상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?

- ㄱ. 비축물자의 소유자가 그 물자의 관리상황과 그 밖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ㄴ. 훈련에 참가한 사람의 인도·인수를 위한 인도·인수사무소는 시·도지사가 설치하여야 하고, 인도·인수 장소가 사용기관의 시설구역 안인 경우에도 사용기관에서 인도·인수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.
- ㄷ.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언제든지 비상대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.
- ㄹ. 시·도지사가 시장등과 훈련대상자를 사용할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속 직원을 인도·인수 장소에 출석시켜 훈련에 참가한 사람을 인도·인수하게 하는 경우, 인도·인수관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.

- ① ㄱ, ㄹ
 ② ㄴ, ㄷ
 ③ ㄱ, ㄴ, ㄷ
 ④ ㄱ, ㄷ, ㄹ

민방위기본법(시행령 포함)

문 10. 민방위기본법령상 민방위대 편성 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직장 민방위대 조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자는 그 사실을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직장 민방위 대장은 소속 민방위 대원 중 퇴직한 자가 있으면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읍·면·동장이나 직장 민방위 대장은 2년마다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려야 한다.
- ④ 민방위대의 조직에서 제외되는 자가 속한 직장의 장은 그 소속원이 신분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원의 거주지 읍·면·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